2011. 3. 21. 의결, 2011. 7. 1. 시행
2015. 4. 13. 수정, 2015. 5. 15. 시행
2021. 12. 6. 수정, 2022. 3. 1. 시행
2023. 4. 24. 수정, 2023. 7. 1. 시행
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31 식품 · 보건범죄 양형기준

식품 · 보건범죄의 양형기준은 다음의 범죄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6조의2[23]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24]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25] 제3호,[26] 제6호의2,[27] 제7호,[28] 제2항,[29] 제3항,[30] 제4항 제1의2호[31]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32] 제2항,[33] 제3항, 제4항, 제94조 제1항 제1호,[34] 제2호,[35] 제2호의2,[36] 제2항,[37] 제3항,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7조 제4항,[38] 제9조 제4항,[39]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40]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제7조 제4항과 제9조 제4항은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23)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
24) 우수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 · 허위광고, 표준규격품 · 우수관리인증농산물 · 품질인증품 ·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 지리적표시품에 관한 혼합판매 등, 지리적표시품에 관한 허위표시
25) 기립불능의 가축을 도축하는 행위
26) 가축에 물 먹이기 등 행위
27)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또는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허위표시 · 광고 등 행위
28)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 판매
29) 5년 이내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제7호 동종재범
30)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또는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표시 · 광고 등 행위
31) 축산물의 가공처리기준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 · 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 · 포장 · 보존 또는 유통하는 행위
32) 광우병, 탄저병, 조류독감 등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 가공 · 수입 · 조리하는 행위
33) 마황, 부자, 천오 등의 원료를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 · 가공 · 수입 · 조리하는 행위
34) 위해식품 등 판매행위, 병든 동물 고기 등 판매행위, 미고시 화학적 합성물 등 판매행위
35) 유독기구 판매
36)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허위표시 · 광고 등 행위
37) 5년 이내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동종재범
38) 식약처장이 정한 식품 등의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 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39) 식약처장이 정한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 ·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 운반 ·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행위
40) 식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과대포장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표시 · 광고 등 행위

제88조[41]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조의2 제2항[42]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43] 제3호, 제2항,[44] 제3항, 제44조 제4호,[45] 제6호,[46] 제7호[47]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48] 제2항[49]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5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1호 내지 제3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11호[51]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5조 제2호 내지 제5호[52]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 한함)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식품위생법 제6조, 제7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이미

41) 집단급식소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42) 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에 관한 기준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43)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성분, 품질,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에 관한 허위표시 · 광고 등 행위
44) 5년 이내 제43조 제1항 제2호 동종재범
45)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성분, 품질, 이력관리 등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행위 중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을 제외한 나머지 허위표시 · 광고 등 행위
46)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라는 명칭 또는 그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 · 광고하는 행위
47)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사용 · 저장 · 운반 · 보존 또는 진열하는 행위, 용기 · 포장에 관한 표시기준을 위반한 건강기능식품 판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혼동할 유사표시 등 행위
48) 용기 · 포장 · 첨부문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된 의약품이나 위조된 의약품의 판매 행위
49) 의약품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 ·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허위표시 또는 광고 금지 행위
50)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
51)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 · 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제31조 제2항 · 제3항과 제41조 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된 의약품으로서 그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제52조 제1항에 따라 기준이 정하여진 의약품으로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 또는 변질이나 변하여 썩은 물질로 된 의약품, 병원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 이물질이 섞였거나 부착된 의약품, 식약처장이 정한 타르색소와 다른 타르색소가 사용된 의약품,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또는 진열하는 행위
52) 제8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화장품,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화장품, 이물이 혼입되었거나 부착된 화장품,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 등 행위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 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 · 취득 · 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약사법 제62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 변조, 그 정을 알고 판매 · 취득 · 알선한 경우에 한함), 제5조

-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같은 법 제27조 제1항[5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밑줄 표시된 법 조항은 양형기준 설정(수정) 후 개정되어 삭제되거나 변경된 조항으로서 해당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향후 수정될 예정이므로, 현 양형기준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함

53) 무면허 의료행위

Ⅰ. 형종 및 형량의 기준

01 | 허위표시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중소규모 유형 (5,000만 원 미만)	– 8월	4월 – 1년	10월 – 1년6월
2	일반 유형	4월 – 1년	10월 – 2년	1년6월 – 3년6월
3	대규모 유형 (5억 원 초과)	8월 – 2년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 광고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 광고 등 행위 ●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행위자 /기타	●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02 |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가짜 등 기준 · 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8월 – 1년6월	1년 – 2년6월	2년 – 4년
2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1년 – 2년	1년6월 – 3년	2년6월 – 5년
3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1년6월 – 3년	2년 – 4년6월	4년 – 7년
4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2년6월 – 4년	3년6월 – 6년	5년 – 8년
5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4년 – 7년	5년 – 8년	7년 – 10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이 아닌 경우(1, 2유형)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 · 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행위자/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또는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 · 보존 · 진열 행위만 한 경우 ●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상해가 발생한 경우(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 의약품인 경우(1, 4, 5유형) ●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행위자/기타	●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03 | 부정의료행위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1년 – 2년6월	1년6월 – 3년	2년6월 – 4년
3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2년6월 – 5년	4년 – 7년	5년 – 8년

구분		감경인자	가중인자
특별 양형 인자	행위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 (2유형)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동종 누범
일반 양형 인자	행위	●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행위자 /기타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후 10년 미만)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유형의 정의]

01 | 허위표시

● 아래 구성요건 및 적용법조에 해당하는 행위를 의미한다(이하 같음).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 변경하는 행위 (iii)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하는 자가 다음 각 행위를 한 경우 (i)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 · 판매 · 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 · 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 · 변경하여 보관 · 진열하는 행위 (iii)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 · 판매 · 제공하는 행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상습으로 제14조 또는 제15조의 죄를 범한 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ii)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 · 변경하는 행위 (iii)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의무자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를 한 농수산물에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혼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는 행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7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가축에게 강제로 물을 먹이거나 식육에 물을 주입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중량 또는 용량을 늘리는 행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표시(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함),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을 그 기준에 맞는 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 · 진열 ·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제12조의2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 용도에 관한 표시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i)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 등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94조 제1항 제2호의2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제9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식품 등의 명칭 · 제조방법, 품질 · 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 · 원재료 · 성분 · 용도에 관한 표시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i)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ii) 소비자 기만 등 (iii) 다른 업체 등 비방 (iv) 무심의 등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중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43조 제1항 제2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43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중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ii)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적용 업소라는 명칭이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시 · 광고 (iii) 표시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유사표시 금지 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같은 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에 우수표시품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ii) 우수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우수표시품으로 광고하거나 우수표시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iii)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 또는 지리적표시품에 표준규격품,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 이력추적관리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행위 (iv) 지리적표시품이 아닌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포장 · 용기 · 선전물 및 관련 서류에 지리적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는 행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또는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i)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 · 효과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45조 제1항 제6호의2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전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5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6호의2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축산물을 판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후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원재료, 용도 및 품질과 그 포장에 관한 허위 · 과대 · 비방의 표시 · 광고 또는 과대포장 중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i)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 (ii) 소비자 기만 등 (iii) 다른 업체 등 비방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의약품의 용기, 포장, 첨부문서에 필수적 기재사항이 미비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ii)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 · 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학적 효능 ·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거나, 이와 같은 의약품과 유사하게 표시 · 광고된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또는 진열 (i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단,'위조 의약품' 판매 등의 경우는 제외함),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02 |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가. 제1유형(가짜 등 기준 · 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식약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 보존 또는 진열 (ii) 식약처 고시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한 기구 및 용기 ·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 운반 · 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 (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 (같은 법 제7조 제4항, 제9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식약처 고시 기준 · 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제조 · 수입 · 사용 · 저장 · 운반 · 보존 · 진열 (ii)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배합 · 혼합비율 · 함량이 의약품과 같거나 유사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거나 그러한 건강기능식품을 수입 · 판매 또는 진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7호(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기준, 가공기준이나 성분규격에 맞지 아니한 가축 또는 판매 목적 수입 축산물의 도살 · 처리, 집유 및 가공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4항 제1의2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위조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 · 진열한 경우 (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중 '위조 의약품'의 경우에 한하며,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다음 각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또는 진열 (i) 대한민국약전에 실린 의약품으로서 성상 · 성능 또는 품질이 대한민국약전에서 정한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의약품 (ii) 성분 또는 분량(유효 성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본질 또는 제조 방법의 요지)이 허가 또는 신고된 내용과 다른 의약품 (iii) 식약처장이 정한 성질 · 상태 · 품질 · 저장방법 등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아니한 의약품 (iv)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하며,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8조 제5항에 따른 유통화장품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보관 또는 진열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5조 제5호 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 보존 또는 진열 (ii)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사용 · 저장 · 운반 · 보존 또는 진열 (iii) 이미 허가 또는 신고된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하게 위조 · 변조하거나 그 사실을 알고 판매 · 취득 · 알선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식품위생법 제7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 · 신고된 식품 등의 위 · 변조 등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주된 성분의 효능을 전혀 다른 성분의 효능으로 대체하거나 허가된 함량보다 현저히 부족하게 제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ii)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사하게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정황을 알고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판매를 알선하거나 또는 진료의 목적으로 구입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 제2호 (약사법 제62조 제2호를 위반한 경우와 이미 허가된 의약품의 위 · 변조 등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나. 제2유형(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료 또는 성분 등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 · 수입 또는 조리 1. 마황 2. 부자 3. 천오 4. 초오 5. 백부자 6. 섬수 7. 백선피 8. 사리풀	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	1년 이상의 징역
제93조 제2항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항	1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제94조 제2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3조 제4항	1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위해식품 등, 병든 동물 고기 등, 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채취 ·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 진열 (ii) 유독 ·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 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 · 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 운반 · 진열 (iii) 집단급식소의 경우 관련규정을 준용함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94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4조 제3항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위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사용 · 저장 · 운반 · 진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3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43조 제1항 제3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3조 제2항, 제1항 제3호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3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 · 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 (ii) 썩은 것, 유독물질이 들어있는 것,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것 등의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 · 가공 · 포장 · 사용 · 수입 · 보관 · 운반 또는 진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2호, 제7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제45조 제1항 제7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전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제45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7호의 죄를 범한 자가 해당 축산물을 판매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후문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i) 불결한 물질 또는 썩은 물질로 된, 병원 미생물에 오염된, 이물질이 섞여 있는, 식약처장이 정하지 아니한 타르색소가 사용된, 국민보건에 위해를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저장 또는 진열 (ii) 의약외품의 경우에 관련 규정을 준용함	약사법 제94조 제1항 제9호(같은 법 제62조 제4호 내지 제7호, 제11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전부 또는 일부가 변패된, 병원미생물에 오염된, 이물이 혼입되거나 부착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사용된(사용이 제한된 원료를 제한 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보관 또는 진열	화장품법 제36조 제1항 제3호(같은 법 제15조 제2호 내지 제5호 전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i) 기준 ·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 (ii) 위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 수입 · 가공 · 사용 · 조리 · 저장 · 소분 · 운반 또는 진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식품위생법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다. 제3유형(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소해면상뇌증(광우병), 2. 탄저병, 3. 가금 인플루엔자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 · 가공 · 수입 또는 조리	식품위생법 제93조 제1항	3년 이상의 징역
제93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3조 제3항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제94조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재범한 자가 식품 등을 판매	식품위생법 제93조 제4항	3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4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

라. 제4유형(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i)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 (ii) 의약품이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때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 제1호, 제3호(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마. 제5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2, 3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 2, 3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4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3호(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제3조 제1항 제3호(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한함)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03 | 부정의료행위

가. 제1유형(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제2유형(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사람이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부정의료업자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다.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구성요건	적용법조	법정형
1, 2유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각 1, 2유형에서의 그것과 같음	

[양형인자의 정의]

01 | 허위표시[54)]

가.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피용자 또는 부하직원의 지위에서 회사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해 수동적으로 범행에 참여하거나 범행수행에 소극적인 역할만 담당한 경우
- 타인의 강압이나 위협 등에 의하여 강요된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하는 경우(형법 제1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범행을 단순 공모하였을 뿐 범행을 주도하지 아니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하지도 않은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 100% 외국산 쌀을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는 경우와 달리, 외국산 쌀과 국산 쌀을 혼합하여 국산 쌀인 것처럼 판매하거나, 실제로는 수입 고춧가루 50%와 국산 고춧가루 50%로 혼합한 고춧가루를 '수입 고춧가루 30%, 국산 고춧가루 70%'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행위 등 비난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벼운 경우를 의미한다.

다. 허위표시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같은 법 제10조 제2항(같은 법 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식품위생법 제95조 제1호(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호, 제6호, 제7호(같은 법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54)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9조 제1호, 제1호의2, 제2호, 제3호, 제4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3항
– 약사법 제93조 제1항 제10호[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단, '위조 의약품' 판매 등의 경우는 제외함),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한함. 같은 법 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함]

라.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의 대부분이 제3자에게 점유 · 소유가 넘겨지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지배하에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마.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상품인 경우
– 백화점이나 전문 대리점 등 상대적으로 높은 공신력이 부여되는 장소에서 판매되는 상품인 경우
–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진 대규모 기업이 허위표시 등을 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바.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허위표시가 제거된 상태에서의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차이가 큰 경우를 의미한다.

사.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기망의 수단과 방법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경우
–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한 경우
– 포장시설 기타 자동화 설비, 인쇄된 라벨이나 포장지를 사용하여 범행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아. 내부비리 고발

● 구조적 비리에 가담해 온 피고인이 범죄를 단절시키고자 하는 자발적 동기에서 내부비리를 고발함으로써 수사가 개시된 경우를 의미한다.

자.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다음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차. 5년 이내 동종재범(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 광고 등 행위)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2호의2,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6호의2

카. 질병 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 광고 등 행위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6호의2

타.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다음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파. 동종 전과

● 양형기준이 설정된 식품 · 보건범죄(허위표시 유형 범죄뿐만 아니라 유해식품 · 의약품 · 화장품 유형 및 부정의료행위 유형의 범죄를 모두 포함)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

하.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지속적으로 무분별하게 원산지를 허위표시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의 산물이 부족한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다른 지역의 산물을 허위로 원산지 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 거래처에서 납품단가를 너무 낮게 책정하는 바람에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하여 허위표시 범죄를 범한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거.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이 경우 대중매체는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인터넷 사이트 등을 의미한다.

너.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더. 진지한 반성

●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러. 형사처벌 전력 없음

●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02 |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55]

가.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법령에 의해 관할관청에 제출하거나 기록 · 보존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이를 위조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유아 · 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분유, 이유식, 어린이용 비타민, 어린이용 보습제 등 유아 또는 어린이의 건강과 성장에 관련된 식품 · 의약품 · 화장품을 의미한다.

다. 5년 이내 동종재범(위해식품 판매 등 행위)

● 다음 각 처벌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2항,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항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제1항 제3호, 제3항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 제2항, 제1항 제7호

55) 부정의료행위에도 적용되는 동일한 명칭의 양형인자의 경우, 따로 정의하지 않는 한 이와 같다.

라. 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사람에게 해악을 가하거나 경제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이 아닌 경우를 의미한다(예를 들면, 임상실험의 목적으로 의약품을 제조한 경우 등).

마.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바. 처벌불원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 ·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사. 실질적 피해 회복

-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공탁의 경우에는 공탁에 대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 · 직계친족 · 형제자매를 포함)의 의견, 피고인이 법령상 공탁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하거나 회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피해 법익의 성질 및 피해의 규모와 정도 등을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실질적 피해 회복에 해당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피해자가 피해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구조금을 받은 경우(피고인이 사후에 국가에 구상의무를 이행한 경우 포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외한다.

아.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 · 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03 | 부정의료행위

가.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라고 함은 말기 암,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식물상태, 뇌사 등 현대 의료수준에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회복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라고 함은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자발적 · 명시적으로 요구한 경우를 의미한다.

나.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

● 단순한 건강검진, 성병검사, DNA 검사와 같이 해석상으로는 의료행위에 포함되지만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행위로 볼 수 없거나, 뜸이나 수지침 등과 같이 신체에 대한 침해의 정도가 낮은 의료행위 또는 의료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치료 효과가 나타난 경우를 의미한다.

다. 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환자 본인이나 그 보호자가 피고인에게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면허가 없음을 잘 알면서도 치료행위를 사전에 허락한 경우로서 적극적 요구에까지 이르지는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라.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실제로 영업을 개시한 후 단속될 때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01 |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형량범위는 특별양형인자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다만 복수의 특별양형인자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평가한 후 그 평가 결과에 따라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❶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는 같은 숫자의 행위자/기타인자보다 중하게 고려한다.
  - ❷ 같은 숫자의 행위인자 상호간 또는 행위자/기타인자 상호간은 동등한 것으로 본다.
  - ❸ 위 ❶, ❷ 원칙에 의하여도 형량범위가 확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법관이 위 ❶, ❷ 원칙에 기초하여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함으로써 형량범위의 변동 여부를 결정한다.
- 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요소가 큰 경우에는 가중적 형량범위를, 감경요소가 큰 경우에는 감경적 형량범위를, 그 밖의 경우에는 기본적 형량범위를 선택할 것을 권고한다.

02 | 선고형의 결정방법

- 선고형은 위 1항에 의하여 결정된 형량범위 내에서 일반양형인자와 특별양형인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공통원칙]

0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❶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한다.

❷ 특별양형인자에 대한 평가 결과 감경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감경인자가 특별가중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한다.

02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가중/감경에 의한 처단형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 또는 하한에 따른다.

03 |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의 처리방법

● 양형기준의 양형인자표에 포함된 법률상 임의적 감경사유에 대하여 법관이 법률상 감경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경우에는 정상참작감경 사유로 고려한다.

[다수범죄 처리기준]

01 | 적용범위

●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범죄 사이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에 관하여는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02 | 기본범죄 결정

● 기본범죄는 형종 선택 및 법률상 가중/감경을 거친 후 형이 가장 중한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위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이 이와 경합되는 범죄의 양형기준상 형량범위 상한보다 낮은 경우에는 경합되는 범죄를 기본범죄로 한다.

03 | 동종경합범 처리방법

●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하여는 아래의 처리방법을 적용한다.

❶ 허위로 표시된 식품 등의 판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그 유형 중에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형량범위 영역을 선택한다.

❷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하고,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2단계 이상 높아지는 경우에는 형량범위 하한의 1/2을 감경하되, 가장 중한 단일범죄에 적용되는 유형의 형량범위 하한을 한도로 한다.

●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관하여는, 아래의 '이종경합범 처리방법'의 예에 따른다.

04 | 이종경합범 처리방법

● 이종경합범 및 허위표시 유형 외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상 하나의 범죄로 취급되는 경우 외에는 아래의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❶ 2개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❷ 3개 이상의 다수범에 있어서는,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 중 형량범위 상한이 가장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 두 번째로 높은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을 합산하여 형량범위를 정한다.

❸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하한보다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이 높은 경우에는 다수범죄 처리 결과로 인한 형량범위 하한은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하한으로 한다.

● 다만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먼저 허위표시 유형의 동종경합범에 대한 처리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형량범위를 기준으로 위 다수범죄 가중방법을 적용한다.

Ⅱ. 집행유예 기준

01 | 허위표시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3유형인 경우 ● 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 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 상습범(원산지 허위표시인 경우)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1유형인 경우 ● 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질병예방 및 치료 효능 등 내용의 표시 · 광고 등 행위 ●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02 | 유해 식품 · 의약품 · 화장품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유해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 유아 · 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행 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아니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적발 후 바로 폐업 ·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026. 7. 1. 수정시행

03 | 부정의료행위

구분	부정적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 동종 전과(10년 이내) ● 2, 3유형인 경우 ● 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2, 3유형)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 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 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 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반 참작 사유	● 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피해 회복 노력 없음(상해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 2회 이상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 진지한 반성 없음 ● 공범으로서 주도적 역할 ●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	● 공범으로서 소극 가담 ●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진지한 반성 ●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2026.
7. 1.
수정시행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 및 벌금은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 시까지로 계산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❶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❷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한다.
  ❸ 위 ❶ 또는 ❷에 해당하나 일반부정(긍정)사유와 일반긍정(부정)사유의 개수 차이가 주요긍정(부정)사유와 주요부정(긍정)사유의 개수 차이보다 많은 경우이거나, 위 ❶ 또는 ❷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